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番號	468
------	-----

提出年月日 : 1994. 9.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 가. 現行 電氣料, TV 視聽料, 上·下水道 使用料, 廢棄物手數料, 都市ガス료등 6개
公課金을 統合하여 賦課 徵收하는 統合公課金制度가 政府方針에의거 '94. 10. 1부
터 公課金別로 分離 施行하게 됨에 따라
- 나. 統合公課金에 委託하여 賦課 徵收 하고있는 현행 上水道使用料의 徵收方法등을
自體告知에 알맞도록 改善하여 上水道 使用料 課徵業務를 效率的으로 處理 하고
자 함.
- 다. 上水道 使用料 告知書에 市의 他公課金을 併科告知하여 市民의 不便을 最小化
豫算을 節減코자 함.

2. 主要骨子

- 가. 統合公課金에 의한 告知書 發行 및 徵收 規定 削除(案제31조)
- 나. 上水道 使用料의 他會計 委託 課徵 規定 削除(案제31조의2)
- 다. 告知書 發行者를 管轄地域事業所長名義로 하고 他公課金統合告知 條項新設, 他
公課金 受託告知時 委託機關 負擔金 納付規定 新設 (案제34조)

3. 參考事項(關聯法規)

- 가. 地方自治法 제130조(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①使用料, 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
收에 관한 事項은 條例로 정한다.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관할 지역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타 공과금을 병기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타공과금을 통합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0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이전 검침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조례의개정) 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중 “통합공과금”을 “시공과금”으로 하고, “대전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업무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1조(납기와징수방법)①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p> <p>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p> <p>②통합고지서에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명부에 의거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p> <p>제31조의 2(위탁) 삼수도 사용료는 급수조례 제31조 제1항에 의거 통합공과금에 포함 과정토록 관련사회계계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1조(납기와징수방법)①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20일,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p> <p>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삭 제)</p> <p>(삭 제)</p>
제34조(납부고지)① (생략)	제34조(납부고지)①(현행과 같음)
②(신 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관할 지역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타 공과금을 병기하여 통합고지할 수 있다.
③(생 락)	③ (현행과 같음)
④(신 설)	④ 제2항의 타 공과금을 통합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삼수도사업본부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척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고 1994년 10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검침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③(다른조례의개정)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중 "통합공과금"을 "시공과금"으로 하고, "대전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업무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전직할시삼수도급수조례"로 한다.</p>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4. 10. .
産業建設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出日字 및 提出者 : 1994. 9. 22. 大田直轄市長
- 나. 回附日字 : 1994. 9. 24.
- 다. 上程日字 : 第35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1994. 9. 30) 上程,
 質疑, 審査, 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上水道事業本部長 강원조)

가. 提案理由

- (가) 現行 電氣料, TV 視聽料, 上·下水道 使用料, 廢棄物 手數料, 都市 가스료등 6개 公課金을 統合하여 賦課 徵收하는 統合公課金制度가 政府方針에 依據 '94. 10. 1부터 公課金別로 分離 施行하게 됨에 따라
- (나) 統合公課金에 委託하여 賦課 徵收하고 있는 現行 上水道 使用料의 徵收方法등을 自體告知에 알맞도록 改善하여 上水道 使用料 課徵業務를 效率的으로 處理하고자 함.
- (다) 上水道 使用料 告知書에 市의 他公課金을 併科告知하여 市民의 不便을 最小化 豫算을 節減코자 함.

나. 主要骨子

(가) 統合公課金에 의한 告知書 發行 및 徵收 規定 削除

(案 第31條)

(나) 上水道 使用料의 他會計 委託 課徵 規定 削除

(案 第31條의2)

(다) 告知書 發行者를 管轄地域事業所長 名儀로 하고 他公課金
統合告知 條項 新設, 他公課金 受託告知時 委託機關 負擔
金 納付規定 新設(案 第34條)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류 기 현)

가.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앞의 內容과 같음.

나. 檢討意見

- 改正條例案의 主要 內容을 報告드리면,
첫째, 現行 紿水條例에 規定되어 있는 統合公課金에 의한
告知書 發行 및 徵收規定을 削除하고
둘째, 上水道 料金의 他會計 委託徵收規定을 削除하며,
셋째, 納付告知書는 管轄區域事業所長 名儀로 發行하고 他
公課金을 併科告知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他公課金을 併料告知할 경우 委託機關의 負擔金 納付
規定을 新設하려는 內容과 또한 附則으로 規定되어
있는 下水道 使用料 條例中 統合公課金 關聯條項이
함께 改正되도록 하는 內容으로써

○ 改正條例案을 檢討해 볼 때

現行 電氣料, TV 視聽料, 上水道 使用料, 下水道 使用料, 廢棄物 手數料, 都市 가스료등 6개 公課金을 統合하여 賦課 徵收하던 制度를 政府方針에 따라 '94. 10. 1부터 當該 公課金에 대한 事業主體別로 각各 賦課 徵收하려는 制度로써, 다만 市와 直接 關聯된 上·下水道 使用料, 廢棄物 手數料등은 上水道 事業本部에서 關聯部署로 부터 委託에 따른 負擔金을 納付 받아 併科告知施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其他 電氣料, TV 視聽料, 都市ガス료등은 當該 事業主體에서 別途로 賦課 徵收코자 하는 事項임.

○ 따라서 이와 같이 公課金制度가 改善될 경우 그동안 公課金 擔當公務員 1人이 需用家를 月 1회 訪問하여 一括處理하는 制度가 事業主體別로 月 3회 정도 訪問하게 됨으로써 賦課 徵收의 正確性 및 效率性 提高面에서는 成果가 있을 것으로 判斷이 되나 需用家の 立場에서는 檢침에 따른 잦은 訪問에 따라 私生活에 不便이 따를 것으로豫想이 되는 바, 市民의 不便을最小化하는 方案도 아울러 講究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가 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없음

5. 討論要旨

없음

6. 小委員會 審查內容

없음

7.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

8. 審查結果

原案可決

9.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